

-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년 1월 14일
- 회부일자 : 2021년 1월 14일

3. 제안사유

- 코로나19 피해 및 근로 사각지대에 처한 도내 임금근로자 및 소규모 영세 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근로관계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노동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 사업위치 :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산 12-2)
- 위탁기간 : 2021. 2. ~ 2023. 12.
- 운영방법 : 노동 상담 전문 기관·단체 위탁운영
- 수탁방법 : 공개모집
-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100%, 민간위탁금) * 연도별 변동가능
- 주요내용 : 근로자 권익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및 노동법률 상담
(부당해고, 산업재해, 임금체불, 노동조합 운영, 근로기준법 일반 등)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우경수)

가. 제출배경

-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는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 코로나19 피해 및 근로 사각지대에 처한 도내 임금근로자와 소규모 영세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근로관계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노동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

나. 주요내용 및 의견

-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는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의 기능을 살펴보면,
 - 근로자 권익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및 노동법률 상담을 주요내용으로 방문상담, 전화상담, 현지출장상담 방법을 통하여
 - ① (부당해고) 부당해고 대응방안, 입증자료 확보방법 등
 - ② (산업재해) 산재 신청 및 구제 상담
 - ③ (임금체불) 체당금 산출, 소액체당금 신청 안내
 - ④ (노동조합운영) 노조 설립·운영·해산 상담 및 임단협 검토
 - ⑤ (근로기준법 일반) 근로계약서·취업규칙 검토, 수당 산출 등
 - ⑥ (사업주 노무권설탕) 중소기업 인사·노무 애로사항 해소 등의 상담 기능 등을 담당 할 예정임.
-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위탁은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근거한 것이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의 기능 측면에서 볼 때 이에 해당 한다고 판단됨.

- 따라서,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및 근로 사각지대에 처한 임금근로자와 소규모 영세 사업장 사업주의 권익 보장을 위해 노동 법률상담 및 구제 등의 업무를 추진해야 하므로, 官의 직영보다는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도내 소재 노동 상담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 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함.

- 다만, 노동법과 관련된 근로자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센터인 만큼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 운영 등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관련 법령

※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5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충청북도지역본부
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노사관련 도 단위 기관·단체, 충청북도내 외국인근로자 기관·단체

제16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교육사업
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 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와의 교류사업
5.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연구사업
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사업
7.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8. 산업재해예방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9.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0.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11.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축제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12.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역량 강화 및 상담·교육 홍보 사업 등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
4.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
5. 삭제 <2020. 12. 18.>